

신구조문 대비표 – 공급망 솔루션-승인된 송장에 대한 구매기업 기본 계약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목) 구매기업 기본약정서	(제목) 공급망 솔루션-승인된 송장에 대한 구매기업 기본 계약서	
(서문) _____ (이하 '고객' 또는 '구매기업'이라 한다)와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은행이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시스템을 통한 구매론을 이용하여 구매기업이 거래기업(이하 '판매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불할 의무가 있는 거래대금을 결제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매론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서문) 본 계약은 []년 []월 []일 다음 당사자들 간에 체결되었다. 당사자: (1) 등록주소를 []로 하는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요 hsbc 거래당사자"); (2) [주요 구매기업] [주소] ("주요 구매기업"); 그리고 (3) 부속서 4에 기재된 기업들("추가 구매기업").	상품명을 구매론에서 공급망 솔루션으로 변경하고 약정명도 구매론 약정에서 공급망 솔루션-승인된 송장에 대한 구매기업 기본약정서로 변경
(목적) 제1조 목적 이 약정은 고객이 합의한 은행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구매론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의 물품 및 용역의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약정의 목적은 1조 정의와 해석 부분으로 대체함

<p>제2조 용어의 정의</p> <p>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매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은행이 그 구매의 만기일 또는 그 전에 대금을 대신 결제하고 이후 구매자로부터 상환받는 결제서비스를 말한다. 구매기업: 은행과 구매론 약정을 체결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기업을 말한다. 판매기업: 구매기업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은행이 제공하는 구매론을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기업을 말한다. 할인신청한도 : 구매기업이 시스템에 등록한 물품대금/용역대금 청구서(invoice) 상의 거래대금 중, 판매기업들이 시스템에서 할인을 신청하는 거래대금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한도를 말한다. 거래승인: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거래내역을 시스템 및 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하고, 이에 대한 구매론 제공 여부를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할인: 판매기업이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을 만기일전에 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할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만기일: 구매론 거래승인시, 해당 구매론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한다. 만약, 만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만기일은 은행 	<p>1.정의와 해석</p> <p>(a)본 계약서에서:</p> <p>"가입 구매기업(Acceding Buyer)"이란 11조 (구매기업의 가입)에 따라 가입하는 회사로서 주요 구매기업의 계열사를 의미한다.</p> <p>"가입 HSBC 거래당사자(Acceding HSBC Counterparty)"란 13조 (HSBC 거래당사자의 가입)에 준하여 가입하는 회사로서 HSBC의 각국 지점 및/또는 계열사를 의미한다.</p> <p>"가입 계약서(Accession Agreement)"란 부속서2 (가입 계약서 양식)의 양식으로 된 계약서를 의미한다.</p> <p>"추가 부속서(Additional Schedule)"란 14조 (추가 부속서)에 준하여 본 계약서에 추가된 부속서를 의미한다.</p> <p>"추가 부속서 발효일(Additional Schedule Effective Date)"이란 각 관련 당사자가 해당 추가 부속서 상 주요HSBC 거래당사자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선행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짜로 당사자가 부속서에 정식으로 서명한 날을 의미한다.</p> <p>"추가 거래장(Additional Transaction Chapter)"은 제목을 "추가 거래장"으로 하는 본 계약서 또는 가입 계약서의 부속서를 의미한다.</p> <p>"조정 금액(Adjustment Amount)"이란 해당 거래의 송장(invoice)에 적용하는 구매기업과 관련 판매업체 간 사전 합의된 할인 금액을 의미한다.</p> <p>"계열사(Affiliate)"는 당사자의 자회사 및 자주 회사 또는 동 자주 회사의 다른 자회사를 의미한다.</p> <p>"계약(서)(Agreement)"은 본 계약서(부속서 포함)를 의미하며 가입 계약서, 추가 부속서에 따른 수정본 및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달리 합의된 사항을 포함한다.</p> <p>"해당 거래장 (Applicable Transaction Chapter)"은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최초 거래장 (Initial Transaction Chapter) 또는 추가 거래장</p>	<p>제 2-5 조의 내용을 통합하였으며 약정 및 시스템과 관련한 용어를 추가하고 절차나 조건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하였음</p>
--	---	---

<p>의영업일로 자동 연장된다.</p> <p>8. 할인금액: 판매기업이 만기일전에 은행을 통하여 판매대금을 조기 회수함으로써 부담하는 대가 또는 그 금액을 말한다.</p> <p>9. 승인수수료: 시스템을 통해 구매론을 이용하는 대가로 구매기업 또는 판매기업이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p>	<p>(Additional Transaction Chapter)을 의미한다.</p> <p>"지표금리(Benchmark Rate)"란 승인된 통화가 (a) 대한민국 원화 (KRW)인 경우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 (이하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의미하고, (i)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대체금리로는 3개월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급)의 채권평가 5사 평균금리를 사용하기로 한다. 해당금리는 협회가 고시하는 CD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 공시하는 금리임을 선정 근거로 한다. (ii) 은행은 홈페이지에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 기간 등을 공시하며, CD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익률 및 선정근거 등을 안내하는 조치를 취한다. (iii) 은행은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CD수익률 산출중단 사실에 대해 전화, 메일, 홈페이지 공시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기로 한다. (b) 미합중국 달러화(USD)인 경우 관련 이자기간의 첫번째일로부터 1영업일전의 Term SOFR screen rate를 말한다. Term SOFR screen rate란 CME Group Benchmark Administration Limited가 고시하는 기간물에 대한 금리이며, 관련 이자 기간에 대응하는 기간물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이자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물 금리 중 가장 근접하여 고시된 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p> <p>"영업일(Business Day)"이란 관할권에서 일반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의미한다.</p> <p>"구매기업(Buyer)"이란 원 구매기업(Original Buyer) 또는 가입 구매기업(Acceding Buyer)을 의미한다. (둘 중 어느 경우이든 구매기업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p> <p>"구매기업 승인금액(Buyer Approved Amount)"은 구매기업이 구매기업 송장과 관련된 지급(해당 세금 포함)에서 적격 크레딧 노트</p>
<p>제3조 할인신청한도 및 거래조건</p> <p>① 구매론의 할인신청한도 및 거래조건은 <별표> 구매론신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p> <p>② 고객은 은행에 통보한 판매기업에 대하여 구매론을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으며, 구매론은 판매기업의 물품 및 용역 공급에 따른 대금결제 용도로만 사용한다.</p> <p>제 4 조 CD수익률의 정의 및 산출업무 중단시 비상계획</p> <p>① 본 약정 상 'CD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 (이하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한다.</p> <p>② CD수익률 산출업무 중단 시의 비상계획</p> <p>1.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대체금리로는 3개월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급)의 채권평가 5사 평균금리를 사용하기로 한다. 해당 금리는 협회가</p>	

<p>고시하는 CD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 공시하는 금리임을 선정 근거로 한다.</p> <p>2. 은행은 홈페이지에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 기간 등을 공시하며, CD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익률 및 선정근거 등을 안내하는 조치를 취한다.</p> <p>3. 은행은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CD수익률 산출중단 사실에 대해 전화, 메일, 홈페이지 공시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기로 한다.</p> <p>제5조 할인율 및 수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판매기업은 만기일 전에 할인받는 경우 할인금액을 제외한 판매대금만을 지급받는다. ② 이 약정에 따라 고객이 은행의 구매론으로 결제할 금액을 판매기업이 만기일 전에 할인받는 경우, 판매기업에 적용할 할인율은 할인일 직전영업일의 CD수익률에 할인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적용한다. 할인가산금리는 <별표> 구매론신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은행은 판매기업이 지급하는 승인수수료는 본 약정에 따른 할인된 판매대금의 입금일이나 만기일에 차감하고, 고객이 지급하는 승인수수료는 결제조건과 상관없이 만기일에 상환 받는 것으로 한다. 	<p>(Qualifying Credit Note 또는 구매기업 유보금(Buyer Retention))를 차감한 금액을 승인하여 구매기업 필수정보의 일부로 HSBC 거래당사자에게 통지한(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되는) (합계)금액을 의미한다.</p> <p>"구매기업 송장(Buyer Invoice)"은 구매기업이 (구매기업의 절대적인 재량으로) HSBC 거래당사자가 구매기업을 대신하여 해당 판매업체에게 지급하고 구매기업이 구매기업 필수정보를 제공하였음을 확인 또는 승인하는 거래 송장을 의미한다.</p> <p>"구매기업 필수정보(Buyer Required Information)"란 구매기업이 HSBC 거래당사자에게 통지한 부속서1 (구매기업 필수정보)에 명시된 정보를 의미하며 송장과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합의된 양식 또는 구매기업과 HSBC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기타 양식으로 업로드 및 HSBC 거래당사자에게 전송된 정보를 의미한다.</p> <p>"구매기업 유보금(Buyer Retention)"은 구매기업 청구서와 관련하여 구매기업이 판매업체에게 통보하고 판매업체가 합의한 유보금을 말한다.</p> <p>"통제권 변경(Change of control)"은 개인 또는 공동으로 행동하는 개인 집단이 [구매기업][모기업]의 직간접적인 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서 (a) "통제"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i) (A)총회에서 최대 투표수의 과반수가 나오게 할 수 있거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B) 이사 또는 기타 동등한 임원의 전체 또는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리. 또는 (C) 이사 또는 기타 동등한 임원이 준수해야 하는 운영 및 재무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 (ii) 발행된 주식 자본의 50% 이상을 실질적으로 보유(이익 또는 자본 배분에서 어느 수준 이상 참여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주식 자본은 제외) (b) "공동으로 행동"하는 개인 집단 이란, 직간접적으로 통제권을 획득하거나 통합하기 위해 지분을 취득(직접 또는 간접)하여 계약 또는 양해 각서에 따라(공식 또는 비</p>
---	---

	<p>공식),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개인 집단을 의미한다.</p> <p>"커뮤니케이션 채널(Communication Channel)"이란 HSBC 거래당사자와 구매기업 또는 플랫폼 개발자 또는 판매업체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의미하며, 플랫폼 개발자가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통한 방식을 포함한다.</p> <p>"조기 지급 수수료(Early Payment Charge)"란 송장결제일 이전 구매기업이 지급하기로 한 승인된 송장에 대하여, 판매업체가 조기 지급을 신청함에 따라 판매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로서,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된 금액을 의미한다.</p> $\text{조기 지급 수수료} = \text{구매기업 승인 금액} \times \text{할인율} \times \text{기간} / 360^*$ <p>(*원화의 경우 365이며, 윤년에 대항되는 기간동안 366을 적용)</p> <p>"발효일(Effective Date)"이란 주요 HSBC 거래당사자가 주요 구매기업에게 부속서3 (선행 조건)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통지하는 날짜를 의미한다.</p> <p>"적격 구매기업 송장(Eligible Buyer Invoice)"은 거부된 송장이 아니며, 해당할 경우 관련 HSBC 거래당사자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당해 HSBC 거래당사자에 의한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매업체에게 통보한 구매기업 송장을 의미한다.</p> <p>"할인율(Discount Rate)"이란 구매기업과 은행이 합의한 이율로서 a) 관련 지표금리에 b) 마진 []%를 더한 이율을 의미한다.</p> <p>"수수료(Fees and Charges)"는 부속서5 (수수료)에 따라 HSBC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p> <p>"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당사자(Parties)를 자회사로 보유한 회사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p>	
--	--	--

	<p>"HSBC 거래당사자(HSBC Counterparties)"란 주요 HSBC 거래당사자와 가입HSBC 거래당사자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문맥에 맞게 해석한다.</p> <p>"HSBC 그룹(HSBC Group)"이란 HSBC Holdings plc와 그 자회사 및 관련 사업체를 의미하며, 수시로 존재 하는 지점도 포함한다.</p> <p>"HSBCnet 계약서(HSBCnet Agreement)" 란 HSBCnet에서의 사용, HSBC 그룹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위해 체결 또는 수정된 계약서를 의미한다.</p> <p>"최초 거래장(Initial Transaction Chapter)"이란 "최초 거래장(Initial Transaction Chapter)"이라는 제목 하에 주요 HSBC 거래당사자 및 원 구매기업의 해당 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부속서를 의미한다.</p> <p>"송장 만기일(Invoice Due Date)"이란 해당 구매기업 필수정보에 명시된 거래 송장의 지급 만기일을 의미한다.</p> <p>"송장 결제일(Invoice Settlement Date)"이란 구매기업이 구매기업 승인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가장 늦은 날짜(구매기업과 해당 판매업체 간 합의한 바가 있는 경우, 송장 만기일과 다를 수 있음)로 (a) 구매기업 필수정보에 명시되어 있거나 식별되거나 (b) 송장 만기일에 대해 합의된 매개변수(구매기업의 지급 일정 등을 기반으로 구매기업과 HSBC 거래당사자가 확인한 매개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단, 이러한 결제일의 날짜가 (i) 본 계약의 2(a) 및 2(b)조항에 따라, 그리고 (ii) 구매기업과 판매업체 간 합의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기업 필수정보에 표시된, 합의된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해당 날짜 또는 유효한 변경 이후에 결정된 날짜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 영업일로 한다.</p> <p>"송장 운송정보(Invoice Shipping Information)"는 부속서1 (구매기업 필수정보) 22조에 기재된 정보를 말한다.</p> <p>"원 구매기업(Original Buyer)"은 주요 구매기업 또는 추가 구매기업을 의미한다.</p>
--	---

	<p>"모회사(Parent)"란 [회사 명칭과 주소를 입력].</p> <p>"당사자(Parties)"란 HSBC 거래당사자와 구매기업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문맥에 맞게 해석된다.</p> <p>"지급 금액(Payable Amount)"은 적격 구매기업 송장에 대한 구매기업 승인 금액과 관련하여 HSBC 거래당사자가 판매업체에게 지급 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4.2(b) 및 4.2(a) 조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HSBC 거래당사자와 판매업체 간 합의한 조건을 반영).</p> <p>"HSCF 플랫폼약정서(HSCF Platform Agreement)"는 해당 제목으로 체결된 별도의 약정을 말한다.</p> <p>"적격 크레딧 노트 [또는 구매기업 유보금](Qualifying Credit Note [or Retention)]"란 구매기업 송장과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구매기업 또는 플랫폼 개발자가 HSBC 거래당사자에 통지한 판매업체가 4조항에 따른 HSBC 거래당사자의 지급일과 송장 결제일 []일 전 중 이른 날짜 이전에 상품의 하자 및 계약의 불완전 이행 등의 사유로 판매업체가 구매기업에게 발행한 크레딧 노트 (credit note)를 의미한다.</p> <p>"플랫폼 개발자(Platform Provider)"는 Kyriba Corp 및 그 자회사 및 계열회사를 의미한다.</p> <p>"거부된 송장(Rejected Invoice)"이란 HSBC 거래당사자가 2(d)조항에 따라 거부한 구매기업 송장을 의미한다.</p> <p>"해당 구매기업 계열사(Relevant Buyer Affiliate)"는 해당 구매기업의 계열사를 의미한다..</p> <p>"승인된 통화(Approved Currency)"란 부속서 1(구매기업 필수정보)에 표시된 통화로, 관련 구매기업 승인 금액이 표시되어 지급시 사용되는 통화를 의미한다.</p> <p>"자회사(Subsidiary)"란 (a) 다른 회사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되거나 (b) 발행된 주식 자본의 절반 이상의 실제 소유자 또는 간접 소유자가 다른 회사이거나 또는 (c) 다른 회사의 다른 자회사</p>	
--	--	--

	<p>의 자회사인 회사를 의미한다. 회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회사가 업무를 지시하고/하거나 이사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구의 구성을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p> <p>"판매업체(Supplier)"란 구매기업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p> <p>"대상 계좌(Target Account)"란 HSBC 거래당사자가 승인된 통화로 된 적격 구매기업 송장과 관련하여 구매기업 승인 금액 지급을 위해 본 계약에서 확인하고 있는 승인 통화에 대해 구매기업과 합의하는 계좌, 또는 가입 구매기업과 관련하여 해당 가입 계약서에서 대상 계좌로 확인된 계좌 및 HSBC 거래당사자가 동일한 목적을 위해 구매기업과 합의하여 정한 기타 계좌를 의미한다.</p> <p>"세금(Tax)"이란 정부 또는 조세 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세금(부가가치세, 판매세 또는 기타 세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부과금, 관세 또는 모든 성격의 수수료(이자, 별금 및 추가금 포함)를 의미한다.</p> <p>"기간(Term)"이란 은행의 조기 지급일(포함)로부터 송장결제일(미포함)까지의 일수를 의미한다.</p> <p>"거래 송장(Trade Invoice)"이란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로 인해 발생하는 구매기업의 판매업체에 대한 금전적 지급 의무를 증명하는 송장을 의미한다.</p> <p>"거래 장(Transaction Chapter)"이란 최초 거래 장(Initial Transaction Chapter) 또는 추가 거래 장(Additional Transaction Chapter)을 의미한다.</p> <p>"미지급 금액(Unpaid Amounts)"이란 4.1(d)조항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p> <p>(b)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단수 표현은 복수를 포함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같다. (ii) 본 "계약", "가입 계약" 또는 기타 계약은 각각 수시로 수정, 보 	
--	--	--

	<p>완, 연장, 재작성, 개정 또는 대체될 수 있다.</p> <p>(iii) "주요 구매기업", "추가 구매기업", "가입 구매기업", "구매기업", "주요 HSBC 거래당사자", "HSBC 거래당사자", HSBC 그룹 계열사, "판매업체"등은 이들의 승계인 및 양수인을 포함한다.</p> <p>(iv) 조항 제목은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p> <p>(v) "조항" 또는 "부속서"는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의 부속서 또는 조항을 지칭한다.</p> <p>(c)본 계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용어 및 표현은 해당 구매기업 또는 HSBC 거래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거래 장(Chapter)에 명시된 정의를 따른다.</p> <p>(d)해당 구매기업 및 HSBC 거래당사자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 장과 본 계약의 조건이 상충되는 경우 해당 거래 장의 조건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해당 구매기업 및 해당 HSBC 거래당사자는 별도의 HSCF 플랫폼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하고, HSCF플랫폼약정서와 본 계약의 조건이 상충되는 경우 HSCF 플랫폼약정서의 조건이 우선한다.</p>	
<p>제6조 거래승인</p> <p>1) 고객은 판매기업에 대한 거래대금을 구매론을 이용하여 결제하고자 할 때에는, 결제할 내역을 인터넷 또는 전용회선 등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은행에 승인요청한다. 다만, 고객이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거래승인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에 신고된 인감으로 날인된 팩스를 통해 거래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은 팩스를 송부한 후 은행에 전자우편을 통하여 동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다만, 팩스에 의한 거래승인 요청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팩스를 받은 익영업일에 처리하기로 한다.</p> <p>2) 위 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팩스를 통한 거래승인 요</p>	<p>2. 구매기업 송장 관련 절차</p> <p>(a) 구매기업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사용하여 수시로 구매기업의 거래 송장과 관련된 구매기업 필수정보를 HSBC 거래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구매기업은 2(b)조항에 따라 구매기업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사용하여 HSBC 거래당사자에 거래 송장의 송장 결제일이 앞당겨졌음을 통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된 구매기업 필수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p> <p>(b) 2(a)조항에도 불구하고 구매기업은 구매기업 송장의 결제일을 원래 통지된 송장 결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수정하지 않기로 한다.</p> <p>(c) 구매기업이 제 3 자가 거래 송장 또는 이와 관련된 부채에 대하여 이해관계(소유권, 담보권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갖고</p>	<p>구매기업의 송장 등록 절차 변경 사항을 반영함</p>

<p>청건은, 은행이 은행에 신고된 고객 인감과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그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은행은 정상요청건으로 간주하여 거래승인을 처리하기로 한다. 또한 동 승인과 관련하여, 은행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제외하고 이 약정의 조건에 따른 은행의 행위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3)은행은 고객의 거래승인 요청금액이 제3조에서 정한, 할인신청한도 내에서 요청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제3조의 할인신청한도와 거래조건 정상거래로 승인 처리한다. 고객은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승인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로 한다.</p> <p>4)고객은 구매론으로 승인된 거래 중에 할인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 만기일 전영업일까지는 거래승인 취소요청을 할 수 있다. 즉, 이미 판매기업이 할인 신청하여 승인금액 중 일부라도 판매기업에 입금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p> <p>5)만기일은 거래승인일로부터 최장 6개월로 하며 고객이 거래승인을 요청할 시점에서 최장 6개월 범위 내에서 일 단위로 만기일을 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p>	<p>있음을 알고 있거나 알게되는 경우 구매기업은 거래 송장과 관련하여 구매기업 필수정보를 HSBC 거래당사자에게 통지해서는 안된다.</p> <p>(d) HSBC 거래당사자는 단독 재량으로 송장 결제일 전 언제라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사용하거나 서면으로 구매기업에게 구매기업 송장의 거부 사실을 통지 할 수 있다.</p> <p>(e) 구매기업은 판매업체가 지급 계좌정보의 변경 등 판매업체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판매업체와 관련된 거래 송장에 대하여 추가 구매기업 필수정보를 제출하기 전에 서면으로 HSBC 거래당사자에게 변경 내용을 통지한다. 구매기업은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기간 동안 구매기업 필수정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요청 시 해당 기록의 사본을 HSBC 거래당사자에게 즉시 제공한다.</p>	
<p>(추가)</p>	<p>3. 정보 제공 의무</p> <p>3.1 구매기업 정보 제공 의무</p> <p>(a) 구매기업은 본 계약에 따른 HSBC 거래당사자의 권리 및 재량권 행사, 의무 수행 목적 및/또는 판매업체에 대한 지급 이행을 위해, 다음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판매업체 이름,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지급계좌 정보(은행 이름, 예금주, 계좌번호)</p> <p>(b)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으로부터 '판매기업 관리서식'을 제출받아 모든 내용</p>	<p>구매기업과 은행의 정보 제공 의무 추가 함</p>

	<p>이 사실이고 완전하며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한 이후, 이를 본 계약에 따라 HSBC 거래당사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p> <p>(c) 구매기업은 다음 내용을 인정하고 동의한다.</p> <p>(i) HSBC 거래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이 제공한 구매기업 필수정보 및 기타 정보를 별도의 조사 없이 신뢰하고 이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그 진실과 정확성을 전제할 수 있다(본 계약서에 따른 구매기업의 의무는 정보의 부정확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음); 그리고</p> <p>(ii) HSBC 그룹 계열사(HSBC 거래당사자 포함) 역시 구매기업 필수정보가 기존의 기록과 배치되는지 유무에 관계없이 동 정보의 진실과 정확성을 조사, 검사 또는 확인하여야 하거나 이에 대한 우려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HSBC 그룹 계열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p> <p>(d) 원 구매기업은 회계사, 독립 감사인 및 법률 고문과 함께 본 계약(및 회계 처리)에 대해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평가 및 검토를 수행했으며 HSBC 그룹 계열사가 제공한 마케팅 자료 또는 문서에 의존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p> <p>(e) 구매기업은 HSBC 거래당사자에 통제권 변경을 즉시 통지한다.</p>	
	<p>3.2 HSBC 거래당사자의 정보 제공 의무</p> <p>(a) 주요 HSBC 거래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신용공여에 대한 절차를 명시한 사용자 가이드를 주요 구매기업에게 제공해야 한다.</p> <p>(b) HSBC 거래당사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법적, 규제적 또는 내부 정책상의 이유가 없는 경우, 구매기업의 합리적인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p> <p>3.3 정보 제공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 등 제반 규제를</p>	

	준수한다.	
<p>제7조 거래승인의 제한</p> <p>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의 거래승인 요청에 대하여 거래승인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단,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거래승인을 재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이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구매론 상환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구매론 약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3. 할인신청한도 를 초과하였거나 초과하게 되는 경우 4. 승인요청일로부터 만기일을 6개월 초과하여 거래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 5. 고객 또는 판매기업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 절차 개시,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종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되는 등 신용상태가 악화하여 지속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다만 신용상태가 정상인 판매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승인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6. 1년이상 거래승인요청이 없는 경우 	<p>4. 지급 의무</p> <p>4.1 구매기업의 지급의무</p> <p>(a) 본 계약에 명시된 HSBC 거래당사자의 약정을 기반으로, 구매기업은 송장 결제일 또는 그 이전에 적격 구매기업 송장의 구매기업 승인 금액(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HSBC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한다. 이러한 지급은 HSBC 거래당사자가 제공한 참조 번호를 인용하여 즉시 인출가능한 자금으로 대상 계좌에 입금하거나 해당 대상 계좌로부터 HSBC 거래당사자가 직접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p> <p>(b) 4.1(a)조항에 언급된 지급 의무는 무조건적이고, 구매기업 송장에 기재되는 금액과 무관하게 구매기업 승인금액(전액)에 대하여 적용되며, 본 4.1 조항을 제외하고 본 계약에 따른 구매기업의 의무를 축소, 해제 또는 침해하는 작위, 부작위 및 사안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또한 이는 4.2(a)(ii)조항에 따른 HSBC 거래당사자의 지급이 일어난 경우, 구매기업이 4.1(a)조항의 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함을 의미하며, 해당 지급과 관련하여 HSBC 거래당사자에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p> <p>(c) 4.1(a)조항에 언급된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해당 구매기업이 송장 결제일 또는 그 이전에 HSBC 거래당사자에게 자금을 송금 또는 입금하였으나 동일한 날짜에 구매기업이 요청한 다른 지급이 있고 상기 송금 또는 입금 금액이 이들 지급을 모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HSBC 거래당사자는 4.1(a)조항에 언급된 지급 의무의 상환을 우선으로 하고, 지급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구매기업의 서면 또는 이메일 지침(18(i)의 정의를 따름)에 따라 이를 지급하며, 자금부족으로 인한 미지급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p> <p>(d) 향후 본 약정상 만기일이 도래하여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구매기업이 HSBC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미지급 금액"), 이는 HSBC 거래당사자의 요구시 지급되어야 한다. 구매기업은 그러한 미지급금을</p>	은행의 거래승인 제한 가능 경우에 대한 설명에만 국한되지 않고 구매기업과 은행의 지급의무 및 그 범위를 명시함

<p>7. 허위 가공거래 등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거래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p> <p>8.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이 판매기업에게 지급할 채무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체납처분 등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p> <p>9. 기타 이 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p> <p>10. 기타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전산시스템 장애, 인터넷망의 장애,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p>	<p>변제하기 위하여 HSBC 거래당사자에 개설된 구매기업 명의의 1개 이상의 은행계좌(대상 계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음)에서, 다음 각 호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금액이 인출되는 것을 승인하며, HSBC 거래당사자는 미지급 금액이 인출 후 이를 구매기업에게 서면 통지한다. 다만, HSBC거래당사자가 구매기업의 대상 계좌 이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 () 영업일전 구매기업에게 통지하도록 한다.</p> <p>(i) 구매기업 또는 플랫폼 개발자의 지급 중지 명령 또는 사기, 위조 또는 기타 결함에 대한 통지, 또는 구매기업, 플랫폼 개발자 등의 기타 요청, 통지, 명령 또는 지시</p> <p>(ii) 판매업체와 관련한 지급 불능 또는 파산 사건 또는 파산 절차의 발생</p> <p>(iii) 구매기업이 판매업체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회수 또는 상계 권리 행사</p> <p>(iv) 구매기업 송장에 포함된 상품 및 서비스의 미배송 또는 거부</p> <p>(v) 문서 또는 동 문서에 명시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기업의 승인 취소 또는 철회</p> <p>(vii) 본 인출에 따른 초과인출 또는 대상 계좌의 여신한도 초과</p> <p>(e) 4.1(d)에 의한 미지급 금액 인출로 하여금 대상 계좌에 초과인출 여신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구매기업은 해당 거래에 부과되는 통상적인 수수료를 HSBC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p> <p>(f) 구매기업이 본 계약에 따른 모든 구매기업 승인 금액을 HSBC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상계, 반대 청구, 공제 또는 원천 징수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p> <p>4.2 HSBC 거래당사자의 지급</p> <p>(a) 구매기업은</p> <p>(i) HSBC 거래당사자가 적격 구매기업 송장에 대해 구매기업의 지급 대리인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권한을 부여하며 각 적격 구매</p>
---	---

	<p>기업 송장의 구매기업 승인 금액과 관련하여 지급 의무가 있는 금액을 송장 결제일까지 해당 판매업체 계좌로 이체하는 지시를 내린다.</p> <p>(ii) 위의 4.2(a)조항에 명시된 지급 대리인 역할 지시 및 권한 부여에도 불구하고 HSBC 거래당사자는 (단독 재량으로 그러나 반드시 이와 같이 선택해야하는 의무 없이, 구매기업 또는 플랫폼 개발자가 구매기업 필수정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지급 의무가 있는 금액을 판매업체와 합의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적격 구매기업 송장에 대한 매출채권을 매수하거나 현금흐름 권리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조기 지급 수수료 공제 후 지급한다. (조기 지급) HSBC 거래당사자가 매출채권 매수 또는 현금흐름 권리 취득을 위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 4.2(a)(i)조항에 따른 이체 지시는, 구매기업, 또는 HSBC 거래당사자 (해당 판매업체 계좌의 반대 의미로) 즉에서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자동으로 수정되어 HSBC 거래당사자로 이체되는 것으로 한다.</p> <p>이와 같은 HSBC 거래당사자의 지급은 구매기업 필수정보에 명시된 세부사항에 따라 이루어진다. 지급을 위한 계좌 세부 정보는 구매기업이 HSBC 거래당사자에 통지하고 HSBC 거래당사자가 통지 수령을 확인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다.</p> <p>(b) HSBC 거래당사자는 제 4.2(a)조에 따라 송장 결제일까지 해당 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반드시 해당 지급금을 지급해야 할 HSBC 거래당사자의 의무는 (재량에 따른 것이 아님) 해당 적격 구매기업 송장과 관련하여 구매기업 승인금액이 해당 수수료와 함께 대상 계좌로 청산 완료되어 즉시 이용 가능한 자금으로 전액 송금 또는 입금된 경우에만 발생한다. 대상 계좌에 대한 해당 자금의 입금 또는 송금이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송장 결제일보다 후일에 이루어 지는 경우, 해당 지급금을 지급해야 할 HSBC 거래당사자의 의무는 (재량에 따른 것이 아님) 그러한 입금 또는 송금을 수령한 때로부터</p>
--	---

	<p>합리적인 기한 내에 구매기업이 지정한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구매기업이 지정한 방식이 없는 경우 HSBC 거래당사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다.</p> <p>(c) 구매기업은 HSBC 거래당사자가 구매기업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대상 계좌에 입금 또는 예치된 금액에서 적격 구매기업 송장에 대한 구매기업 승인 금액(전액)을 HSBC 거래당사자의 계좌에 공제 또는 원천징수 없이 보유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p> <p>(d) 구매기업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의 본 계약 위반의 직접적인 결과로 또는 구매기업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사용으로 HSBC 그룹 계열사에 발생한 손해, 손실, 비용 및 경비(전문 고문 수임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배상 청구에 대해 HSBC 그룹과 그 임원, 이사, 직원, 변호사 및 대리인을 면책하고, 요청 시 HSBC 거래당사자에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단, HSBC 그룹 계열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이러한 손해, 손실, 비용 및 경비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p> <p>(e) 구매기업은 모든 구매기업 송장의 통화에 승인된 통화가 사용되도록 한다.</p> <p>(f) 구매기업은 구매기업 송장과 관련하여 HSBC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구매기업 송장의 통화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p>	
<p>제8조 할인된 금액의 입금</p> <p>① 판매기업은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시스템, 우편(등기우편, 퀵서비스 및 전문택배업체(DHL, FEDEX 등)를 이용한 서비스) 또는 은행 내방을 통하여 은행에 할인 신청할 수 있다. 다만,</p>	<p>(삭제)</p>	<p>우편을 통한 할인신청 절차 삭제 및 1조 정의와 해석 조항으로 통합함</p>

<p>판매기업이 우편에 의하여 할인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판매기업은 할인 신청서 발송 즉시 은행에 전자우편을 통하여 동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은행은 판매기업으로부터 우편에 의하여 할인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통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그 사실을 통지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판매기업이 우편에 의하여 할인 신청을 할 경우, 은행은 할인 신청서상의 예정 할인일에 할인된 금액을 판매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 후, 해당 거래 할인조건을 전자우편을 통하여 판매기업에게 통지한다. 다만, 은행이 예정할인일보다 늦게 할인 신청서를 수령한 경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은 판매기업에게 동 사실을 전화로 통지한 후 판매기업의 지시에 따라 해당 할인신청건을 처리하기로 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할인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 판매기업은 은행에 신고된 인감으로 날인된 팩스를 통해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이 팩스에 의해 할인신청을 수령한 경우, 은행은 동 할인신청을 접수일 익영업일에 처리하며, 해당 거래 할인조건을 전화를 통하여 판매기업에게 통지한다.</p>		
--	--	--

<p>④ 제3 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팩스를 통한 할인 신청은, 은행에 신고된 고객 인감과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은행은 정상요청건으로 간주하여 할인신청을 처리하기로 한다. 상기 할인신청과 관련하여, 은행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제외하고 이 약정의 조건에 따른 은행의 행위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p> <p>⑤ 판매기업의 할인신청에 따른 할인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p> <p>* 할인금액 = 할인대상금액×(할인일 직전영업일의 CD수익률+할인가산금리)×할인일수÷365 (윤년은 366일로 적용한다.) (할인일수는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일수)</p> <p>⑥ 할인신청에 대한 거래 승인이 완료되면 은행은 할인대상금액에서 할인금액과 승인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판매기업이 지정한 판매기업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만기일 전일까지 판매기업의 할인신청이 없는 경우, 은행은 만기일에 판매기업이 지정한 판매기업 명의 계좌에 판매대금을 입금한다.</p>		
(추가)	<p>5. HSBC 거래당사자의 책임</p> <p>(a) HSBC 거래당사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데 동의하며 어떠한 묵시적 의무가 HSBC 거래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또는 암시되지 않는다.</p>	본 계약에 대한 은행의 책임과 범위를 명시함

	<p>(b) HSBC 거래당사자는 구매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특히 HSBC 거래당사자는 판매업체 또는 플랫폼 개발자 또는 구매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관계(대리인, 신탁 등)를 수립하지 않는다.</p> <p>(c) HSBC 거래당사자는 HSBC 거래당사자의 본 계약 의무 불이행 및 위반의 직접적인 결과로 판매업체에 손실, 손해, 비용, 경비가 발생하여 판매업체가 구매기업에게 이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경우, 구매기업을 면책하고, 해당 면책의 범위는 (판매업체가 그러한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전제하에) 판매업체에게 부과된 직접적이고 결과적인 벌금과 판매업체가 구매기업에게 청구하는 합리적인 법률 및 기타 전문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해당 구매기업 승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단, 이러한 손실, 손해, 비용, 경비가 구매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경우 HSBC 거래 당사자는 해당 범위내에서 면책된다.</p> <p>(d) HSBC 그룹의 모든 계열사는 수출 통제, 뇌물 및 부패 방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17(b) 조항의 정의에 따름)에 대한 금융 및 기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관할권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HSBC 거래당사자는 관할권의 법규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HSBC 그룹의 다른 계열사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p> <p>(i) HSBC 거래당사자 또는 HSBC 그룹의 다른 계열사의 시스템을 통해 구매기업 또는 구매기업을 대신하는 플랫폼 개발자가/에게 송부한/송부된 지급 메시지 및 기타 정보의 차단 및 조사; 그리고</p> <p>(ii) 제재 대상 개인 또는 단체, 수출 제한 대상인 개인이나 단체를 지칭하는 이름이 실제로 해당 개인이나 단체를 지칭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질의.</p>	
--	--	--

	<p>(e) 본 계약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HSBC 그룹 계열사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한 조치를 취하거나 5(d)조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해(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또는 기타 의무 이행을 불이행하게 되거나 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당사자가 입은 손실(직접적, 결과적, 이익, 데이터 또는 이자의 손실 여부와 무관) 및 손해에 대해 HSBC 그룹 계열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 특정 정보 처리가 불가하거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HSBC 그룹 계열사는 5(d)조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HSBC 거래당사자의 시스템 상의 정보가, 접근 시점에 정확하고 최신 정보임을 보증하지 않는다. 관련 법규에 명시된 의무에 따라, 주요 HSBC 거래당사자는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한 신속히 주요 구매기업에게 통지한다.</p>	
<p>제9조 구매론 상환</p> <p>① 고객은 구매론 상환을 위하여 은행에 고객 명의의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하여야 하며, 구매론 이용대금은 지정된 만기일에 지정된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은 만기일 이전이라도 은행에 고객의 구매론을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조기상환일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할인율을 일할 적용한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한다.</p> <p>② 고객은 구매론 거래승인 후에 물품의 하자 등의 사유로 판매기업과 매매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더라도, 이미 판매기업이 할인신청하여 은행이 승인금액 중 일부라도 판매기업에 입금한 경우, 또는 고객이 거래승인을 취소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승인한 내용대로 은행에 구매론을 상환하여야 한다.</p>		<p>4.1 구매기업의 지급 의무와 1. 정의와 해석 조항으로 변경함</p>

<p>③ 고객이 만기일에 구매론을 상환하지 않았거나, 만기일 전이라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또 이 경우 할인신청한도는 은행의 판단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승인된 거래 중에 할인되지 않은 거래는 은행에 의해 승인취소될 수 있다.</p> <p>* 연체이자 = 연체금액×(만기일 직전영업일의 CD수익률 + 연체가산금리)×연체일수÷365 (윤년은 366일로 적용한다.)</p> <p>④ 판매기업이 할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해당 거래승인분의 만기일 고객과 합의된 시간에 일괄적으로 구매기업의 지정된 계좌로부터 구매대금을 인출하여 해당 영업일 중 판매기업에게 송금하기로 한다. 지급정지명령 및 계좌잔액부족 등으로 구매대금이 인출되지 않을 경우, 판매기업의 자금 미수취에 따른 손실은 은행이 책임지지 아니한다.</p>		
(추가)	<p>6. 수수료, 비용 및 경비</p> <p>(a) 구매기업은 부록서 5(수수료)의 조건에 따라 HSBC 거래당사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에 동의하고 이를 확인한다. 본 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해지거나 표현된 모든 수수료는 구매기업이 적용 세율에 따라 납부하게 될 해당 관할에서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다.</p> <p>(b) 구매기업이 본 약정과 관련하여 변경, 포기 또는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HSBC 거래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기업은</p>	구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수수료 지급 의무 및 방식에 대해 명시함

	<p>HSBC 거래당사자로부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그러한 요구에 응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 협상 또는 준수 시 HSBC 거래당사자들에게 합리적으로 발생한 제반 비용 및 경비(변호사 비용 포함)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p> <p>(c) 구매기업은 HSBC 거래당사자로부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선행 조건 충족과 관련하여 HSBC 거래당사자에게 합리적으로 발생한 제반 비용 및 경비(법무 비용 포함)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p> <p>(d) 주요 구매기업은 HSBC 거래당사자로부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집행 또는 보전과 관련하여 해당 HSBC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제반 비용 및 경비(변호사 비용 포함) 금액을 해당 HSBC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p>	
(추가)	<p>7. 기밀유지</p> <p>(a) 구매기업은 HSBC 거래당사자가 (i) 구매기업, (ii) 플랫폼 개발자 (구매기업이 필요한 모든 동의를 획득하였으며 HSBC 거래당사자에게 공유, 저장 또는 전송 권한을 부여함을 확인함)에 대한 정보 또는 (iii) 구매기업 필수정보를 HSBC 그룹 내의 플랫폼 개발자 또는 HSBC 거래당사자가 사용하는 대리인 및 제3자와/에게 본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 및 의무 수행을 위해 공유, 저장 또는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단, 이러한 제공은 기밀유지하에 이행됨을 전제로 하며, 정보 수령 당사자는 본 계약의 수준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기밀 유지 합의에 동의해야 한다.</p> <p>(b) 구매기업은 본 계약 및 구매기업 송장과 관련하여 본 계약 상 거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업체 또한 유사한 기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p> <p>(c)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a)조항과 7(b)조항에 따른 정보 공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p> <p>(i) 관련 법규 또는 정부 및 감독 당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범죄 예방 목적으로 정보의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p>	구매기업의 정보 제공 동의 및 기밀 유지에 대한 의무를 명시함

	<p>(ii) 이미 공개 되어 있거나 수령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의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p> <p>(iii) 공개 당사자의 감사인, 법률 또는 세무 고문, 기타 전문 고문 또는 기타 플랫폼 개발자(예: 평가 기관 및 제3자 수탁자 및 대리인)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 및 의무 수행과 관련된 계열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p> <p>(iv) HSBC 거래당사자의 경우, HSBC 거래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양도 또는 이전(또는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는)하는 대상 및/또는 HSBC 거래당사자와 본 계약관련 대출참가 계약 및 기타 리스크 경감(자금 지원 또는 리스크 기반) 합의를 체결하는 대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단 해당 대상자는 본 계약의 수준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기밀 유지 합의에 동의해야 한다; 또는</p> <p>(v) 구매기업 송장 또는 구매기업 승인 금액과 관련한 판매업체에 대한 통지를 포함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p> <p>(d) 당사자는 모든 관련 관할권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위해 해당 정보 보호법 및 기타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구매기업은 플랫폼 개발자와 모든 관련 관할권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정보 보호법 및 기타 법률의 준수에 동의하도록 플랫폼 개발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수정하기로 한다.</p>	
<p>제 10 조 면책</p> <p>은행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은행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제외하고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는 본조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0 조(손실부담 및 면책)를 적용하기로 한다.</p> <p>1.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p>	<p>(삭제)</p>	<p>5.HSBC 거래당사자의 책임 조항으로 통합됨</p>

<p>2.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요인에 의한 은행의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전산장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p> <p>3. 쌍방이 합의하거나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 사항</p> <p>은행의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의거 고의나 과실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사항</p>		
<p>제11조 압류, 가압류 지급제한 사유 발생시 처리</p> <p>① 고객과 판매기업은 은행이 거래승인한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 등이 이를 압류, 가압류하거나 판매기업이 제3자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이미 거래승인된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 이를 즉시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고객은 제1항의 사유 발생시에는 은행에 구매론 거래승인 요청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제1항의 소정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기거래승인을 취소하기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판매기업이 할인신청하여 은행이 승인금액 중 일부라도 판매기업에 입금한 경우, 또는 거래승인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은 거래승인한 내용대로 은행에 구매론을 상환하여야 한다.</p>	<p>(삭제)</p>	<p>4.1 구매기업의 지급 의무 조항으로 통합 됨</p>

<p>③ 고객은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은행에 그 해소 사실 및 구매론 거래승인에 관한 판매대금의 지급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하며 고객과 은행은 그 시점부터 이 약정에 의한 업무를 재개한다.</p>		
<p>제12조 인지세의 부담</p> <p>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한다.</p> <p>② 제 1항에 의하여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고객은 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 및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제5조 제2항에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상환한다.</p>	<p>(삭제)</p>	<p>부록서 5 수수료 조 항에 기타 수수료 항 목으로 대체</p>
<p>제13조 효력 및 약정 기간 등</p> <p>① 이 약정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약정만료일은 약정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p> <p>② 본 약정은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30일 사전 통지에 의한 서면으로 해지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 그러나 서면 해지시에도 모든 미결제 거래에 대한 채무 이행이 완료될때까지 본 약정은 효력을 유지한다.</p> <p>③ 이 약정과 관련된 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8. 계약 기간과 해지</p> <p>(a) 본 계약은 발효일에 발효되며 아래 명시된 모든 면에서 해지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p> <p>(b)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 전체 해지 될 수 있다(일부 해지는 불가하다).</p> <p>(i) 구매기업과 HSBC 거래당사자 간에 최소 30일 이전 상대방에 사전 서면 통지를 한 경우;</p> <p>(ii) 구매기업과 HSBC 거래당사자간에 주요 구매기업이 주요 HSBC 거래당사자에게 또는 주요 HSBC 거래당사자가 주요 구매기업에게 최소 [30]일 이전 서면 통지를 하는 경우; 또는</p> <p>(iii) 구매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구매기업 또는 모든 구매기업과 관련하여 HSBC 거래당사자가 구매기업에게 최소 7일 이전에 서면 통지하거나 주요 HSBC 거래당사자가 주요 구매기업에게 최소 7일 이전에 서</p>	<p>약정 해지의 경우를 구체화 하고 계약 해지가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명시함</p>

	<p>면 통지를 하는 경우 .</p> <p>(A) (구매기업 지급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최대 [30]일의 최고기간을 주고 그 기한내에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p> <p>(B) 구제가 불가능한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4.1 조항(구매기업 지급 의무) 위반을 제외);</p> <p>(C) 시정할 수 있는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4.1 조항(구매기업 지급 의무) 위반을 제외)을 하였으나, HSBC 거래당사자가 구매기업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한 후 [3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p> <p>(D) 해산, 지급 불능 상태가 된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 상환 불능 상태를 서면으로 인정하거나, 해당 관할권에서 본 조항 8(b)(iii)(D)에 명시된 사유와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에 종속된 경우.</p> <p>(c) 구매기업은 HSBC 거래당사자가 본 계약의 해지 시 구매기업과 관련하여 8(d)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효력이 중지됨을 인정한다.</p> <p>(d) 본 계약의 해지는 본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기타 권리, 권한 또는 구제책을 침해하지 않으며,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p> <p>(i) 본 계약 해지 전 발생한 당사자의 권리 또는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제3조항(정보 제공의 의무), 제4조항(지급 의무), 제5조항 (HSBC의 책임), 제7조항(기밀 유지), 제15조항(조건), 제16조항(진술), 제17조항(확약) 그리고 제18조항(기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들 조항은 각각 해지 후에도 적용됨).</p> <p>(ii) 본 계약에 따라 HSBC 거래당사자에 대한 구매기업의 지급의무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적격 구매기업 송장, 미지급 수수료 및 구매기업</p>	
--	--	--

	<p>이 본 계약에 따라 HSBC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타 금액의 미지급 분은 유효한 해지일에(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 HSBC 거래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p> <p>(iii) 해지 통지를 받지 않은 구매기업 또는 HSBC 거래당사자의 경우, 본 계약의 어떤 부분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p>	
(추가)	<p>9.양도와 대출참가</p> <p>(a) 구매기업은 주요 HSBC 거래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없다.</p> <p>(b) HSBC 거래당사자는 (대출참가 약정 및/또는 기타 위험경감조치 등의 방식을 통해) 구매기업의 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그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으며, 구매기업은 HSBC 거래당사자가 그러한 양도 또는 이전을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p> <p>(c) 본 계약은 당사자의 승계인과 허용된 양수인에게도 이익이 되고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p>	구매기업과 은행의 본 계약에 대한 권리 및 의무 양도 가능 조건 명시
(추가)	<p>10. 주요 구매기업 대리인</p> <p>각 구매기업은 본 계약에 대한 가입, 수정 또는 변경(추가 부속서에 따른 부분을 포함)에 대하여 주요 구매기업이 다른 구매기업들을 대신하여 합의 할 수 있으며, 주요 구매기업이 본 계약에 따른 목적을 위해 다른 구매기업의 대리인 역할(요청 전달, 통지 전달</p>	구매기업 대리인의 역할 명시

	<p>또는 구매기업의 기타 커뮤니케이션 제공 및 수령 등을 포함)을 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p>	
(추가)	<p>11. 구매기업의 가입</p> <p>주요 구매기업은 해당 구매기업의 계열사가 구매기업으로 가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계열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기업이 된다.</p> <p>(a) 주요 HSBC 거래당사자가 상기 요청을 승인하고 적법하게 서명된 가입 계약서가 주요 HSBC 거래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경우;</p> <p>(b) 주요 구매기업이 구매기업이 본 계약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으며 해당 계열사가 구매기업이 됨으로 인해 동 조건을 위반하게 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경우; 그리고</p> <p>(c) 주요 HSBC 거래당사자가 가입 계약의 선행 조건으로 요구되는 모든 문서 및 증빙(HSBC 거래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증빙을 의미한다)을 수령한 경우.</p>	구매기업 계열사가 구매기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 명시
(추가)	<p>12. 주요 HSBC 거래당사자 대리인</p> <p>각 HSBC 거래당사자는 본 계약에 대한 가입, 수정 또는 변경(추가 부속서에 따른 부분을 포함)에 대하여 주요 HSBC 거래당사자가 다른 HSBC 거래당사자를 대신하여 합의할 수 있으며, 주요 HSBC 거래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른 목적을 위해 다른 HSBC 거래당사자의 대리인 역할(요청 전달, 통지 전달 또는 구매기업의 기타 커뮤니케이션 제공 및 수령 등을 포함)을 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p>	은행의 대리인 역할 명시

(추가)	<p>13. HSBC 거래당사자의 가입</p> <p>각 구매기업은 주요 HSBC 거래당사자의 계열사가 주요 HSBC 거래당사자 및 주요 구매기업의 서명이 날인된 가입 계약서를 통해 가입 HSBC 거래당사자가 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p>	구매기업이 은행의 계열사가 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될 수 있음에 동의함을 명시
(추가)	<p>14. 추가 부속서</p> <p>하나 이상의 HSBC 거래당사자와 하나 이상의 구매기업 간 적용되는 추가 약정서가 본 계약에 추가 부속서로 첨부될 수 있으며 추가약정서는 해당 추가 부속서 발효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p>	추가 약정서 첨부 가능 및 효력 발생 시점 명시
(추가)	<p>15. 조건</p> <p>본 계약에 따른 각 HSBC 거래당사자의 의무에 대한 선행 조건은 다음과 같다.</p> <p>(a) 발효일이 도래하였을 것;</p> <p>(b) 각 구매기업 또는 해당 구매기업 계열사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한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으며 실행 가능한 합의가 HSBC 그룹 계열사와 구매기업, 또는 주요 구매기업의 계열사("해당 구매기업 계열사")간에 항상 존재할 것; 그리고</p> <p>(c) 해당 구매기업이 제15(b)조에 언급된 문서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해당 구매기업 관련 구매기업 계열사는 주요 HSBC 거래당사자가 요구하는 본 계약 목적상 해당 구매기업 및/또는 관련 구매기업 계열사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접근 및 사용, 및 주요 HSBC 거래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의 주요 HSBC 거래당사자 또는 다른 HSBC 거래당사자에 대한 면책 제공에 관한 계약, 승인 및 기타 문서를 체결하였을 것.</p>	본 계약에 대한 은행의 의무에 대한 선행 조건 명시
(추가)	<p>16. 진술</p> <p>(a) 각 당사자는 서로에게 다음 내용을 진술 및 보증한다.</p> <p>(i)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으며 본 계약에 서명하는 자가 본인이 대표하는 회사에 본 계약에 따른</p>	계약 당사자들의 의무에 대한 진술과 보증

	<p>의무를 부여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p> <p>(ii)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집행 가능한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구성한다.;</p> <p>(iii) 본 계약의 집행 및 이행은 그 구성 문서 또는 동 계약과 관련된 또는 동 계약의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에 적용되는 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정부 당국 등의 승인, 동의 또는 정부 당국에 신고, 등록,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p> <p>(iv) 현재 지급 불능상태가 아니며, 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또는 이루어 질 지급으로 인하여 지급 불능 상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p> <p>(v) 본 계약과 본 계약에 따른 의무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p> <p>(A) 각 당사자가 거주하고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관할권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뇌물수수 방지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위반하지 않을 것이다.</p> <p>(B)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적 또는 상업적 뇌물, 비즈니스, 상업적 이득을 위한 기타 불법 또는 부적절한 수단 또는 부적절한 활동 수행을 위하여 또는 이에 대한 수락 및 묵인을 위해, 지급을 이행, 가치 및 약속을 제공, 재정 및 기타 이익을 부여, 또는 동 목적을 위해 재정 및 기타 이득을 요청하거나 이를 수령 또는 수락하는 것에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p> <p>본 계약에 따른 의무수행을 위해 협력하는 관련자 또는 대리인들 또한 이러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p> <p>(b) 각 구매기업은 본 계약 날짜 및 본 계약에 따라 정한 HSBC 거래당사자에 대한 각 지급일에 HSBC 거래당사자 각각에게 다음 내용을 진술하고 보증한다.</p> <p>(i) 모든 구매기업 송장은 해당 구매기업의 담당부서의 특정 거래로 인한 합법적인 송장이다;</p> <p>(ii) HSBC 거래당사자는 구매기업이 판매업체에게 불합리하게 연장된 지급 조건을 적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품을 활용하는 것을 용</p>	
--	---	--

	<p>인하거나 지원하지 않으며, 판매업체는 각 구매기업 송장에 대하여 지급 조건에 합의 하였으므로, 연장된 지급 기간은 해당 판매업체에게 크게 불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p> <p>(iii)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받는 각 구매기업에 대하여, 각 구매기업은 구매기업의 결제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에 해당 하는 경우 구매기업의 결제 만기일을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조기 지급 수수료를 판매기업에게 별도로 지급한다.</p> <p>(iv)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받는 각 구매기업에 대하여, 각 구매기업은 구매기업의 결제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에 해당 하는 경우 구매기업의 결제 만기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 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조기 지급 수수료를 판매기업에게 별도로 지급 한다</p> <p>(c) 각 구매기업은 각 HSBC 거래당사자에게 본 계약 날짜 및 2(a)조항에 따라 구매기업이 구매기업 필수정보(구매기업이 직접 또는 구매기업을 대신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를 통보하는 날짜에, 구매기업 필수정보가 명시된 각각의 거래 송장과 관련하여 해당 판매업체가 구매기업의 계열사가 아님을 진술하고 보증한다.</p>	
(추가)	<p>17. 확약</p> <p>(a) 각 구매기업은 각 구매기업 또는 구매기업의 거래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뇌물 및 부패 방지법,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관련 법률, 수출입 허가 의무 등을 포함한 수출 통제 법 등)를 충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준수할 것이고, 구매기업의 계좌 개설팀이 해당 HSBC 거래당사자에 구매기업 송장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 판매업체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실사를 이행하도록 할 것임을 확약한다.</p>	구매기업이 모든 법 규를 준수하고 준수 할 것임을 확약함

	<p>(b) 17(a)조항에서 정하는 원칙을 전제로, 각 구매기업은 다음을 확약한다.</p> <p>(i) 구매기업과 구매기업의 자회사, 이사, 임직원, 대리인 및 계열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아니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아니다. (i)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 미국 국무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럽연합, 영국 재무부, 홍콩 금융당국(HKMA), 대한민국 금융당국이 발표, 관리 또는 시행하는 제재의 대상(총칭하여 "제재"), 또는 (ii) 제재 대상이거나 정부가 제재 대상인 국가 또는 영토에 소재, 조직 또는 거주.</p> <p>(ii) 구매기업은 제재 대상 또는 그 정부가 제재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 국가 또는 영토의 활동 또는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계약으로부터 또는 어떤 개인 및 법인의 제재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방식으로 파생된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p> <p>(iii) 구매기업은 영업활동을 하는 각 관할권 및 각 구매기업 송장과 관련하여 제재에 대한 국내외 법규를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구매기업 송장과 관련된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뇌물, 부패, 탈세 또는 제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해당 HSBC 거래당사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p> <p>(c) 각 구매기업은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한 모든 세금을 부담하고 합산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만일 구매기업이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따른 지급에서 공제 또는 원천 징수를 해야 하는 경우, 구매기업은 지급 금액을 증액하여 해당 공제 또는 원천 징수 후에도 HSBC 거래당사자가 수령하는 순 총액이 공제 또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수령할 총액과 같은 금액이 되도록 해야한다.</p> <p>(d) 원천징수세가 있는 경우, 각 구매기업은 원천징수세 납부 후 30일 이내에 해당 HSBC 거래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식으로 원천징수 소득세 영수증/증빙을 제공한다.</p> <p>(e) 각 구매기업은 본 계약과 HSBC 거래당사자의 판매업체에 대한 지급으로 인해 HSBC 거래당사자에 대해 부과되거나 청구되는 세금(조세 당국 또는</p>	
--	--	--

	<p>이에 준하는 기타 정부 기관이 해당 HSBC 거래당사자의 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손해, 비용 또는 경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각 HSBC 거래당사자를 면책한다. 이러한 면책은 본 계약 해지 이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한다.</p>	
<p>제 14 조 약관적용의 순서</p> <p>① 고객과 은행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정과 다를 경우, 그 합의사항을 이 약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p>②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다만 여신에만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만약, 이 약정과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경우, 이 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먼저 적용한다.</p>	<p>18. 기타</p> <p>(a) 본 계약에 따른 각 HSBC 거래당사자의 권리는 필요시 마다 행사될 수 있으며, 누적되고, 관련 법률에 따른 권리를 배제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특정하는 경우에만 포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리의 행사가 지연되거나 행사하지 않는 것이 해당 권리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p> <p>(b)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사 소통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의사 소통은 서면 또는 전자 기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본 계약 첫 장 또는 부속서 4 및 관련 가입 계약에 명시된 각자의 주소 또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통지한 기타 주소로 당사자에게 전송된다. 서면 의사소통은 전자우편, 보통 우편, 직접 배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배송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수령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p> <p>(c) 본 계약에 따라 HSBC 거래당사자에 대한 구매기업의 지시 또는 권한으로 이루어진 모든 지급은 상계 또는 반대 청구가 없고 지급자가 법률에 따라 공제 또는 원천 징수를 해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제 또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하여 공제 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경우, 해당 구매기업은 HSBC 거래당사자가 수령하는 순 금액이 이러한 공제 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수령할 총 금액과 같은 금액이 되도록 추가 금액을 지급한다.</p> <p>(d) 각 구매기업은 HSBC 거래당사자의 구매기업 송장 대금 지급으로 인하여 판매업체가 관할권에서 동 지급에 부과되는 원천징수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HSBC 거래당사는 이러한 원천징수세 부담과 관련하여 판매업체가 제기한 청구에 책임이 없음을 인정한다. 판매업체 또는</p>	<p>약관적용의 순서와 그 외에 본 계약의 권리 및 계약당사자들의 의무 등을 추가 명시함</p>
<p>제 15 조 언어</p> <p>이 약정은 국문 외에 영문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국문본과 영문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문본이 우선한다.</p>		

	<p>조세 당국이 HSBC 거래당사자에게 이러한 원천징수세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구매기업은 즉시 청구된 금액을 HSBC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한다.</p> <p>(e) [주요 구매기업][모기업]은 구매기업의 각각의 모든 의무 또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기로 불가역적으로 합의한다.</p> <p>(f) 판매업체가 통신 수신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는 경우, 각 구매기업은 해당 HSBC 거래당사자가 구매기업 송장, 지급일 및 관련 지급 금액을 식별하는 지급 정보가 포함된 암호화된 이메일을 판매업체에게 보낼 수 있도록 승인한다. 단, HSBC 거래당사자는, HSBC 거래당사자의 시스템 오류의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업체에게 보내는 이메일의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구매기업(또는 판매업체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p> <p>(g) HSBC 거래당사자가 공급망 금융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설명 및 관심 확인, 계약 체결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채널 등을 통하여 판매업체와 소통하는 경우, 주요 구매기업 및 각 해당 구매기업은 본 계약이 약정에 따라 해지될 때까지 상기 목적을 위해 상표, 서비스 마크, 상호, 로고 및 기타 식별자를 사용, 재생산 및 표시할 수 있는 로열티 없는 전 세계 비독점적 라이선스에 합의한다.</p> <p>(h) 각 구매기업이 (A) 송장 결제일과 출금 예정 금액 및 (B) 해당 계좌의 출금 여부 확인을 위해 HSBC 거래당사자로부터 암호화된 이메일을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HSBC 거래당사자에게 적절한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기로 한다. 이러한 이메일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HSBC 거래당사자는, HSBC 거래당사자에게 구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기업에게 발행한 이메일의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해 구매기업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p> <p>(i) 각 HSBC 거래당사자는 받은 모든 정보 또는 구매기업을 대신하여 계약에 대한 모든 협약 및 의무와 관련하여 HSBC 거래당사자에 이메일로 제공된 모든 정보("이메일 지침")를 수락하고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의존하고, 동</p>
--	--

	<p>정보를 유효하고 정확한 것으로 취급할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이메일 지침의 승인 또는 유효성에 대해 문의해야할 의무가 없다. 특히, 이메일 지침에는 구매기업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HSBC 거래당사자가 지급을 하게되는 판매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구매기업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대리인 역할을 하는 주요 구매기업의 계열사에게)가 포함된다. 또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각 구매기업은 이메일 지침이 중도 차단, 모니터링, 변경 및 손상, 바이러스 감염 또는 기타 제3자의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수락하며, 각 HSBC 거래당사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비용, 손해, 청구, 요구 및 비용("손실")에 대하여 HSBC 거래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구매기업 또는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ii) 구매기업이 이메일 지침을 제공하거나 HSBC 거래당사자가 타인에게 동 작업의 수행을 허용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HSBC 거래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구매기업은 요청 시 HSBC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실(미승인 이메일 지침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을 보상한다. <p>부속서 7에 이메일 지침에 대한 권한이 있는 원 구매기업의 대리인이 명시되어 있다 (합의에 따라 변경 가능). 이메일 지침에 대한 권한이 있는 가입 구매기업의 대리인은 가입 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다(합의에 따라 변경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j)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은행 계좌 및 해당 HSBC 거래당사자와 구매기업 간의 기타 계약과 관련된 표준 약관에 따른 HSBC 거래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k) 본 계약의 수정 또는 보완은 주요 구매기업과 주요 HSBC 거래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효력을 가진다. (l) 본 계약은 둘 이상의 부분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각 부분은 원본으로 간주되나 모두 합하여 하나의 동일한 문서를 구성한다. 	
--	--	--

	<p>(m) 본 계약의 각 조건은 다른 조건과 분리되어 있다. 어떤 조건이 특정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무효, 불법, 또는 시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해도, 동 조건은 다른 관할권의 법률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나머지 조건도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p> <p>(n) 본 계약은 본 계약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 구매기업 계좌 거래 또는 HSBC 그룹 계열사의 관련 여신 제공과 관련된 기타 계약, 비즈니스 약정 및 계약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본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p> <p>(o) 본 계약에 따른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문서, 통지 또는 기타 통신 및 소통은 [영어] 또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p> <p>이상을 증거로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법적 구속력을 위하여, 상기 명시된 날짜에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p>	
(추가)	부속서 1: 구매기업 필수정보	구매기업이 제공해야 할 필수 정보 기재란 추가
(추가)	부속서 2: 가입 계약서 양식	구매기업/은행의 대리인의 가입 계약서 양식 추가
< 별 표 > 구매론 신청서	<p>가입 계약서에 대한 부속서 1</p> <p>추가거래장</p>	약정 체결시 주요사항 삭제 및 변경
(추가)	<p>가입 계약서에 대한 부속서 2</p> <p>선행 조건</p>	가입 계약서 작성시 선행 조건에 대해 명시함
(추가)	부속서 3: 선행 조건	본 계약에 대한 선행 조건 명시함

(추가)	부속서 4: 추가 구매기업	구매기업 대리인/계 열사 세부 정보 기재 란 추가
(추가)	부속서 5: 수수료	구매기업이 은행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 내역 기재
(추가)	부속서 6: 최초 거래 장 (INITIAL TRANSACTION CHAPTER) [insert]	
(추가)	부속서 7: 이메일 지침 수권서명인	이메일 지침 수권자 정보 기재란 추가
	서명란	